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5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23. 5. 19.

○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59)

2. 제안이유

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조항 개정(안 제10조제1항)

- [별지 제6호서식] 삭제

나. 표창사실 확인 조항 개정(안 제18조제1~3항)

-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 자격·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
- [별지 제7~8호서식] 신설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: 2023. 4. 27. ~ 5. 1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(안 제10조제1항)에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조항 개정하는 내용으로 '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.' 로 개정하고 [별지 제6호 서식]을 삭제하고, (안 제18조제1~3항)에 표창사실 확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신청 자격·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 [별지 제7~8호 서식]을 신설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

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표창장이란 어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만큼 존경의 의미를 부여하고 표창장 디자인을 선정할 때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